대출 상담 및 신청서

MG새마을금고

접수일자	20 . . .
접수번호	
상담일자	20 . . .
상담번호	
관리번호 (사원번호 등)	

결재	담당			이사장

대출계좌번호	

새마을금고 앞

※ 본 신청서는 대출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공통 필수정보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주 소 (현거주지)	☐ 자 택					
	☐ 직 장					
전화번호 (선택가능)	☐ 자 택		우편물 송달	☐ 자택 ☐ 직장 ☐ 원하지 않음 ※'원하지 않음'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도 고객 보호를 위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의무발송 대상 DM은 발송됩니다.		
	☐ 직 장					
	☐ 휴대폰					

신용평가 관련 정보(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대출에 한함.)							
주거정보	주거 현황	☐ 자택 ☐ 전세 ☐ 월세 ☐ 기타	주택종류	☐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단독 ☐ 기타	결혼 구분	☐ 결혼 ☐ 미혼 ☐ 기타	
	현거주자 거주기간	년 월	임대현황 (가구수)	가구	총 임대금액		
직장정보	직장 구분		※직장구분은 직업코드를 입력 (대출상담자가 작성)	직장명			
	직위 구분		※직위구분은 직업코드를 입력 (대출상담자가 작성)	직종 구분	☐ 관리직 ☐ 영업직 ☐ 기술직 ☐ 전문직 ☐ 자영업 ☐ 기타( )		
	직장 전화		종업원수	명	현 직장근무 년수/사업년수	년	전직장 근무년수 (1년이상) 년
소득현황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	가계 총 연소득	원			
	총가계부채	원	월 저축 가능액	원			
재산정보	최근1년간 재산세납부	원	자동차 보유	☐ 유 ☐ 무	차종		
	월 의료보험료 납입액 (자영업자만 기재)	원	월 국민연금 납입액 (자영업자만 기재)	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1성명		생년월일				
	연대보증인2성명		생년월일				

신청내용							
대출신청 담당자 ( )	대출신청 구분	☐ 신규 ☐ 재약정 ☐ 기한연장 ☐ 증액	대출신청 금액	금 원	거래 구분	☐ 한도 ☐ 개별	
	대출기간	신규, 재약정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간)	상환자원			
		연기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간)	연기사유			

등록No. : 31-01-3 재질 : 모조70g/㎡
인색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

대출 상담 및 신청서

MG새마을금고

상환방법 담당자 ( )	담보조건		☐ 신용 ☐ 담보 ☐ 보증	한도금액		접수번호	
	담보물건 번호			담보코드, 어음번호, 증서번호, 증권번호, 계좌번호	대출 과목		대출과목(목기준)작성
					대출 세목		
	대출 용도	일반	☐ 가계 (☐ 주택구입 / ☐ 주택임차 / ☐ 부채상환 / ☐ 사업자금 / ☐ 결혼 / ☐ 내구소비재구입 / ☐ 생활비 / ☐ 학자금 / ☐ 기타( )) ☐ 기업 (☐ 운전자금 / ☐ 시설자금) ☐ 긴급 ☐ 농어민 ☐ 공공 ☐ 정책				
		상세					
	스피드마이너스 대출모계좌			질권설정 정보	계좌번호		
	상환 방법	원금	☐ 만기일시 ☐ 원금균등분할 ☐ 원리금균등분할 ☐ 기타( )	거치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거치상품만 기재
		이자	☐ 매월 ☐ 기타( )				
	최초원금 상환일자		20 년 월 일	최초이자 납입일자	20 년 월 일	원리금 납입일	20 년 월 일
대출희망일, 자동이체, SMS 신청	20 년 월 일			대출결과 통보 희망연락처(본인)			
	자동이체 신청		☐ 신청 ☐ 미신청	자동이체신청 계좌번호		대출금입금 계좌번호	
	급여이체 신청		☐ 신청 ☐ 미신청	급여이체 처리구분	※급여이체일 상이, 사업장 상이 구분	급여이체 형식구분	☐ 급여 ☐ 상여 ☐ 급여 및 상여
	SMS(문자서비스) 신청 (대출승인, 상환일, 연체여부 등 정보제공 목적)					☐ 신청 ☐ 미신청	
연대보증인 ※연기시등 작성	연대보증인		( )함. (동의) (인)	연대보증인	( )함. (동의) (인)		
	담보제공자		( )함. (동의) (인)	연대보증인	( )함. (동의) (인)		

* 본인은 상기 기재내용과 같이 귀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대출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 직 원 작 성 란

신용조사서	전산출력 첨부(신용조사서 등)		대출부결 (또는 감액) 사유	섭 외 자	
대출가부	• 대출구분(항목) : / • 대출가능금액 : 만원 • 금리 : 연 %, • 상환방식 : ☐ 일시 ☐ 원금분할 ☐ 원리금분할 ☐ 일부원리금분할 • 담보조건 : ☐ 무보증 ☐ 담보제공 ☐ 연대보증 ☐ 기타			직위	
				성명	
승인통지 예정일	20 년 월 일	본인확인 및 상담자	직위	성명	
		상담방법	☐ 방문 ☐ 전화 ☐ fax ☐ 인터넷 ☐ 기타		
상담자 종합의견					
대출모집인 정보	모집구분	☐ 대출모집법인 (모집법인명)	모집인명		
		☐ 부동산중개업소, 법무사	등록번호		

등록No. : 31-01-3 재질 : 모조70g/㎡
인색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채무자 보관용

_____ 새마을금고 앞

20 년 월 일

새마을금고는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본 인(겸 담보제공자) (인)
주 소 _____

담보제공자 (인)
주 소 _____

본인은 _____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합니다)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희 새마을금고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 표시합니다.)

대 출 과 목			거 래 구 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대 출 개 시 일	20 년 월 일		대 출 기 간 만 료 일	20 년 월 일
대출이자율등 (연이율)	☐ 고정금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변동금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기준금리: ☐ 내부기준금리(일반_신규)(동류) ☐ 내부기준금리(일반_잔액)(☐ 동류 / ☐ 개별) ☐ 내부기준금리(시장연동_신규)(동류) ☐ 내부기준금리(시장연동_잔액)(☐동류 / ☐ 개별) ☐ COFIX금리(☐신규/☐잔액/☐신잔액) ☐ 금융채AAA ☐ CD금리 ☐ 수신금리연동금리 ☐ 기타( )	가산금리: + ( )%	금리 변동주기: ☐ 3개월(CD금리)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가산금리는 약정 이후 우대금리 재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혼합금리	고정금리: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간 연 ( )%		
		변동금리: 고정금리 적용기간 만료 이후	기준금리: ☐ 내부기준금리(일반_신규)(동류) ☐ 내부기준금리(일반_잔액)(☐ 동류 / ☐ 개별) ☐ 내부기준금리(시장연동_신규)(동류) ☐ 내부기준금리(시장연동_잔액)(☐ 동류 / ☐ 개별) ☐ COFIX금리(☐신규/☐잔액/☐신잔액) ☐ 금융채AAA ☐ CD금리 ☐ 수신금리연동금리 ☐ 기타( )	가산금리: + ( )% / 금리 변동주기: ☐ 3개월(CD금리)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가산금리는 약정 이후 우대금리 재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 1년을 365일(윤년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은 위에서 정한 대출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됩니다. 단, 최고지연배상금률 이내로 합니다. 가. 연체기간이 3개월이내인 경우 : 연( )% 나. 연체기간이 6개월이내인 경우 : 연( )% 다. 연체기간이 6개월초과인 경우 : 연( )%		대출실행방법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등에 의 하여 새마을금고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월 이내에서 매 ( )개월 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다. ☐ 기타( )
	최고 지연배상금률 (제3조에서 정한 방법)	최고 연( )%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새마을금고 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상환방식 — 거치기간	☐ 없음	☐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거치기간 만료일 : 년 월 일)	
	☐ 분할상환방식 — ☐ 균등분할	거치기간만료일로부터 매 ( )개월마다 (☐ 원금 ☐ 원리금)을 해당 이자지급일에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분할상환방식 — ☐ 부분균등분할	대출금 중 금( )원은 대출기간 만료일에 상환하며, 나머지 대출금액은 거치기간만료일 로부터 매 ( )개월마다 (☐ 원금 ☐ 원리금)을 해당 이자지급일에 균등 분할상환합니다.		
	☐ 기타상환방식	( )		
이자지급 시기 및 방법	☐ 매월 ( )일(납부일)에 지급합니다.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기타 ( )			
중도상환수수료	☐ 대상 ☐ 비대상	※ 중도상환수수료는「중도상환대출금액×수수료율×(잔존일수÷대출기간)」으로 하며, 중도상환수수료율은 ( )%를 적용합니다.		☐ 특약사항
대출금입금계좌번호	( ) 예금주 :			
자동이체 신청	☐ 이자 및 할부금 등의 납입을 위해 「예금계좌번호( )」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예금주(신청인) : (인)
	☐ 신청하지 않습니다.			

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_____새마을금고 (이하 "새마을금고"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이 약관을 모든 사무소 및 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등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새마을금고와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등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새마을금고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새마을금고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http://www.kfcc.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새마을금고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는 새마을금고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새마을금고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새마을금고가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금융채무자의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는 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⑦ 새마을금고가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⑧ 제4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사무소 및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⑨ 제3항 및 제7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4조(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2. 담보 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 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의 비용을 새마을금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새마을금고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새마을금고는 대출약정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등 철회가 불가능한 대출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새마을금고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새마을금고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새마을금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새마을금고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적금 기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이하 "제 예·적금 등"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제 예·적금 등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새마을금고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새마을금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새마을금고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새마을금고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새마을금고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새마을금고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으로서 제3항의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0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개인금융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⑥ 새마을금고가 제5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통지 내용, 통지 방법 및 예외사유 등 제반 규정을 따릅니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새마을금고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새마을금고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새마을금고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2조 대출이자율의 적용

① 제1조에서 선택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대출개시일 현재의 「기준금리 + 가산금리」에 의해 결정되며, 변동금리에 의한 대출이자율은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변경하여 적용됩니다.

② 제1조에서 선택한 각 기준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1. 금융채(AAA)금리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해당일의 10일 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나이스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에프앤자산평가의 각 기간별(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금융채 I (AAA)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로 적용합니다.
2. COFIX금리(신규, 잔액, 신잔액)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해당일의 3일(직장금고의 경우 10일) 전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가장 최근의 COFIX(신규, 잔액, 신잔액)금리로 적용합니다.
3. CD금리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해당일의 10일 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나이스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의 CD시가평가기준수익률(AAA)(3개월물) 평균을 과거 30일간 평균한 금리로 적용합니다.
4. 국고채금리는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해당일의 10일 전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나이스피앤아이·한국자산평가·KIS채권평가·에프앤자산평가의 각 기간별(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국고채 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평균한 금리로 적용합니다.
5. 내부기준금리는 새마을금고의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를 의미하며, 대출개시일과 매 금리변동주기가 도래하는 날에 대해 해당일의 10일 전 금리로 적용합니다.
6. 수신금리연동금리는 담보로 제공된 예·적(부)금 등의 수신금리에 연동되는 등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 혼합금리의 경우 제1조에서 정한 고정금리 적용기간 중 최초 약정한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변동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 없이 제1조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새마을금고에서 자동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④ 제1조 정한 변동금리 혹은 혼합금리의 가산금리는 약정 이후 우대금리 재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대출 만료일의 다음날 또는 기한이익상실일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은행은 본인과의 기존 약정에 따를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④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분할상환원(리)금의 상환을 6개월이상 계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1조의 대출이자율이 최고 지연배상금률 이상인 경우 지연배상금률은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한 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 중도상환수수료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기간(기한연장 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중에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제1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 잔존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에서 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3.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제1조에서 정한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만료일까지의 일수가 3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 되는 날을 대출만료일로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1. 당해 금고 예·적금, 공제증권 담보대출 및 보증서담보대출인 경우
2. 한도거래대출 상환, 정상적인 할부상환원금을 납입하는 경우 및 재대출·대환 등으로 인해 대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인 경우
3. 자동이체, 급여이체로 원금을 상환 할 경우(직장 새마을금고에 한함)
4. 기한의 이익상실 등으로 금고가 법적조치(경매, 소송 등)를 통해 대출금을 기일전에 회수(상계·충당 포함)하는 경우
5.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대출. 다만, 재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잔여대출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다만, 대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잔여대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로 합니다.
7. 채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8.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9. 기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경우

제5조 대출금 상환 또는 채무인수 의무

① 대출을 받은 후 당해 시설물과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가 인정하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② 이 약정에 의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곧 대출금 전액을 상환합니다.

제6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새마을금고가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새마을금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7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제예·적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새마을금고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② 제 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공제의 제지급금 등에 미칩니다.

③ 제예·적금 등이 기한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새마을금고는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제예·적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8조 담보, 보험 및 추가담보 제공

① 본인은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받아 건설 또는 구입하는 시설물과 건물(대출 받은 토지 위에 건설하는 시설물, 건물 포함)에 건설도중이나 건설완료 후에도 새마을금고의 승인 없이 그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등기, 임차권 등 각종 권리의 설정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제3자로부터 새마을금고의 권리가 침해되는일이 없기로 하며, 동 시설물과 건물은 토지와 함께 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새마을금고가 요청하는 경우 새마을금고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새마을금고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이 담보로 제공할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정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토지의 지적정리 완료 후에도 제1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의 담보가치가 감소(후취담보취득시 포함)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6조(담보의제공)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새마을금고는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새마을금고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본 조에서 "연대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제7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제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증인에 대해서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채무조정요청)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개인금융채무자가 대출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금고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1조(새마을금고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 예·적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적금 등과 상계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적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적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 예·적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새마을금고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제 예·적금 등의 이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로 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제12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한 제 예·적금 등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제 예·적금 등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없이 새마을금고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새마을금고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새마을금고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새마을금고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 장소는 그 거래사무소로 합니다. 이 경우 새마을금고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새마을금고는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새마을금고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1조,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4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새마을금고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새마을금고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 예· 적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새마을금고의 채권 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새마을금고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2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새마을금고의 채권보전 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 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 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새마을금고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새마을금고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새마을금고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새마을금고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새마을금고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새마을금고가 어음이나 제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16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 내용을 새마을금고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새마을금고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6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 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보며, 계좌별 대출원금(약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이 3천만원 미만인 채무자의 기한전의 채무변제 통지에 대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새마을금고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회보하며 또 새마을금고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새마을금고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새마을금고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조(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사무소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타 새마을금고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타 새마을금고를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1조(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새마을금고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새마을금고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새마을금고의 거래사무소 및 홈페이지(http://www.kfcc.co.kr)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새마을금고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 (http://www. kfcc.co.kr)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새마을금고는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⑥ 새마을금고는 약관을 거래사무소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22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새마을금고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새마을금고의 거래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타 새마을금고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또는 타 새마을금고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채무자 보관용

▣ 질권의 목적인 예·적금 등의 표시

종 별	증서기번호 계좌번호	명의인 또는 위탁자 수 익 자	금 액 (계약액)	20 . . . 까지 입금 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제9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담 보 제 공 자	(인)	전화번호	

※ 「변동금리대출」은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이자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이자율 인상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고, 「대출금리 등 상품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대출기간 만료일 전(기한연기로 만기일이 연장된 경우 포함)에 대출금을 상환(일부상환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본인은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자동이체 설정시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 약관도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겸 담보제공자)	(인)	전화번호	
담 보 제 공 자	(인)	전화번호	

<별첨 : 새마을금고 내부자동이체 약관>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새마을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내부 또는 금고간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신청·변경 및 해지) 내부자동이체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체일 1영업일전까지 내부자동이체(신규·변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영업일) 다음 각호의 휴일을 제외한 날을 영업일로 합니다.

1. 대통령령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2. 토요일
3. 근로자의 날

제4조(이체처리 및 과실책임)

① 금고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체하여야 할 금액을 별도 통지없이 이체일에 신청인 명의의 출금계좌로부터 입금계좌로 이체처리하며, 내부자동이체를 위하여 신청인 명의의 출금계좌에서 출금할 경우 지급청구서 기타 관련증서 없이 금고의 내부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처리합니다.

② 금고는 이체일에 1회이상 금고가 정하는 시간에 이체처리하며, 신청인은 이체일 금고 영업시간까지 이체금액 이상의 출금계좌 예금잔액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금잔액(자동대 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미달,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등으로 이체일에 납부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5조(잔액부족시 처리)

① 신청인이 지정한 이체일에 지급가능잔액이 이체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족자금이 채워지는 날에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계좌가 대출계좌인 경우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이자, 원(리)금을 부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제6조(출금 우선순위) 이체일에 동일 출금계좌에서 다수의 자동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휴일인 경우 업무처리) 이체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자에 처리합니다. 다만, 거치식예금의 월이자 지급은 전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8조(자동이체 해지) 자동이체 등록계좌가 최종 출금일로부터 6월 동안 자동이체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금고에서는 해당 납부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자동이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관련예금약관, 여신 거래기본약관 및 금고의 업무처리절차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새마을금고 보관용

MG 새마을금고

근담보

결재	담 당			이사장

새마을금고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으로 [ ]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채 권 자 (겸 근저당권자)	성 명		(인)
	주 소		
채 무 자	성 명		(인)
	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성 명		(인)
	주 소		

위 당사자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습니다.

제1조 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합니다)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을 승인하고, 이 계약서 끝부분 "근저당물건 목록" 란에 기재한 물건(이하 "근저당물건"이라 합니다)에 다음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1. 피담보채무의 범위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에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이 가운데에서

□ 특정근담보	□ 한정근담보	□ 포괄근담보 "본인의 필요에 의함"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후 음영처리된 문구를 담보제공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사무소 · 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한정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본사무소 · 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거래. 거래

포괄근담보

채무자(법인 또는 기업여신으로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함)가 채권자(본사무소 · 분사무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및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등록No. : 31-10-2 재질 : NCR지
인쇄 : 별색 4도 면수 : 단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MG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

2. 채권최고액

가. 금 원

나. 설정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최초 채권액을 기준삼아 정하였다 하여도 이를 이유로 이 계약을 특정채무 담보 저당권설정계약으로 해석하지 않기로 합니다.

3. 근저당권 결산기

채권자는 근저당권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에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형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 정 형

20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설정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설정자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저당권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제2조 공부와 실제의 불일치 등

① 근저당물건의 실제가 이 계약서 끝부분 목록란의 기재나 공부상 기재와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 근저당권은 실제물건 위에 그 효력이 미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곧 변경등기나 경정등기 기타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근저당 토지상에 미등기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때에는 설정자는 지체없이 그 보존등기를 하는 동시에 그 건물에 제1조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합니다.

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 등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멸실·훼손 등 채권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②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훼손·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보험계약

①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채권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종류와 금액으로 보험계약을 맺고,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 위에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 그 보험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동안 이를 계속 유지합니다.

② 설정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 외에 근저당물건에 대하여 따로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는 이를 곧 채권자에게 통지하며, 채권자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합니다.

③ 설정자가 제1항, 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한 보험계약을 설정자를 대신하여 맺거나 계속하고 그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채무자와 설정자는 연대하여 채권자가 지급한 보험료 기타의 제 비용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험계약에 터잡아 채권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담보채무의 기한 도래전일지라도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지상권·전세권·임차권

① 설정자는 근저당 물건이 건물만인 경우, 그 대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 곧 그 설정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임차권인 때에도 설정자는 임차기간만료한 때에는 곧 임대차계약 계속의 절차를 밟고 또 토지소유자의 변경이 있는 때, 곧 임차권의 내용변경이 생길 경우에는 미리 채권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등록No. : 31-10-2 재질 : NCR지
인색 : 별색 4도 면수 : 단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③ 설정자는 제1항의 지상권·전세권이나 제2항의 임차권에 관하여 해지 기타 그 권리의 소멸 또는 변경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아니하며 또 그러한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건물이 멸실한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없이 그 권리의 임의 처분을 아니하기로 합니다.
④ 근저당건물이 화재 기타의 원인으로 멸실하고 보험금 등으로 충당하고도 채무가 남은 경우에 설정자가 곧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처분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그 처분대전으로 제3조제3항에 준하여 나머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6조 근저당물건의 처분·관리 등

① 근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새마을금고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처분방법 외에 채권자는 설정자를 위하여 근저당물건을 관리하고 그 수익금으로 제1항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③ 설정자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말미암아 근저당물건이 정상적으로 관리·유지되지 아니하고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근저당물건을 점유하여 관리 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설정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의 처분 또는 관리에 필요한 협력을 합니다.

제7조 회보와 조사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상황에 관하여 채권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곧 회보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제8조 여러 절차의 이행과 비용 부담

① 설정자는 이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 등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청구를 할 때 당해 등기에 드는 비용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설명합니다. 채권자가 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비용은 채무자와 설정자에게 청구하지 아니하며, 이 설명을 한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합니다.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나.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4.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균분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근저당물건의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의 행사를 위한 비용 등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채권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④ 채무자가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에 따라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제9조 다른 담보 · 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설정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계약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계약에 의한 담보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설정자가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10조 담보 등의 변경 · 해지 · 해제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 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 · 해제 등 설정자가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채권자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 · 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설정자 : (인)

등록No. : 31-10-2 재질 : NCR지
인색 : 별색 4도 면수 : 단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새마을금고 보관용

MG새마을금고

근저당물건목록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할 것)

대상목적물의 표시	순 위

※ 설정자는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들었음)

1.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인)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인)

※ 설정자가 타인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설정자는 이 계약서 작성일을 포함하여 3일이내에 담보제공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제공 철회권을 미리 포기하고 이 설정계약을 즉시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시 설정자는 위 기간이내에 본인의 의사를 다음란에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철회함. 20 년 월 일, 포기함. 20 년 월 일)

담보제공의사를 철회합니까? (담보제공 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이 계약은 취소되고 설정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담보설정 · 해지에 드는 비용은 설정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담보제공 철회권을 포기합니까? (담보제공 철회권을 포기한 때에는 이 설정계약은 즉시 확정됩니다.)	20 년 월 일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이 계약서에 따라 등기되었음을 확인하고, 등기권리증을 수령함.

20 년 월 일

설정자 (인)

담보제공자(저당권설정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저당권이란

- 채무자가 기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설정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권리입니다.
- 따라서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타인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 재산을 잃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담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 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 ·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 하지 않습니다.
-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담보」
특정된 거래계약(예 :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담보」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 : 부동산담보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담보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여 그 책임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담보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

-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담보제공부동산외에 담보제공자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부동산 매매시 유의사항

- 담보부동산 매매시 새마을금고의 신고 후 새마을금고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승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자 · 매도자 모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잔여채무를 연체하고 담보물의 처분가가 회수액에 미달하는 경우 새마을금고는 매도인에게 잔여채무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였더라도 매도인의 기타 채무 연체를 사유로 새마을금고는 매수인의 담보부동산을 강제집행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신용상태, 새마을금고의 심사기준, 법률 및 외부규정 제한 등에 의하여 승낙이 불가할 수 있으니 담보부동산 매매 전에 새마을금고 직원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No. : 31-10-2 재질 : NCR지
인색 : 별색 4도 면수 : 단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

근보증서

MG새마을금고

근보증

결재	담 당			이사장

새마을금고는 연대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연대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으로 ☐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1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연대보증인이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_____ **새마을금고** 앞

20 년 월 일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주 소		

연대보증인(이하 "보증인"이라 합니다)은 채무자가 _____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 합니다)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제1조에서 정하는 범위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서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성 명	
주 소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새마을금고는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에서 ☐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특정근보증

채무자가 새마을금고(본·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아래 약정의 상환기일 또는 거래기간을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 연장할 때에는 그 채무 포함)

20 년 월 일자 약정서

20 년 월 일자 약정서

등록No. : 31-11-2 재질 : 모조70g/㎡
인색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근보증서

MG새마을금고

한정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본·분사무소)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거래, 거래

포괄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본 · 분사무소)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다음 채무

가.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외국환거래 및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나. 신용카드거래로 말미암은 채무(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제외)

다.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라.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가"의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

3. 근보증한도액

가. 금 원

4. 근보증 결산기

새마을금고는 근보증 결산기를 정하는 다음의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에서 정한 날을 결산기로 하기로 합니다.

지정형

20 년 월 일

자동확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장래지정형

정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 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중 다음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 보증한 부분은 제1항제2호 피보증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특별법에 의한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근로자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 보험업법에 의한 보증보험주식회사
6. 기타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는 기관

등록No. : 31-11-2 재질 : 모조70g/㎡
인색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

제2조 상계의 제한

보증인은 주채무의 기일도래 전 또는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한 기한의 이익상실(기업자금의 경우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청구 사유 발생 포함)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제예·적금 기타의 채권에 의한 주채무와의 상계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제3조 다른 담보·보증약정과의 관계

① 보증인이 채무자의 새마을금고 대한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따로 담보를 제공하고 있거나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담보나 보증은 이 보증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이 약정에 의한 보증책임과 별개의 것으로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담보가치의 하락 등을 대비한 새마을금고의 청구에 의하여 같은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담보제공과 동시에 같은 금액으로 연대보증을 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이행한 범위내에서 다른 책임도 면합니다.

제4조 담보 등의 변경·해지·해제

보증인이 동의를 한 때나, 동등한 가치 이상의 담보대체, 동등한 자력이상의 보증인 교체 또는 일부 변제액에 비례한 담보나 보증의 해지·해제 등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의 구상실현에 불리한 영향이 없을 때에는 거래상 필요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다른 담보나 보증을 변경 또는 해지·해제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5조 특약사항

보증인 : (인)

※ 보증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재예시 : 1. 수령함, 2, 3. 들었음)

1.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인)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인)
3.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인)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등록No. : 31-11-2 재질 : 모조70g/㎡
인색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인이란

- 새마을금고(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으며 또한 채권자는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용/어/해/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근보증』는 채무자와 새마을금고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 범위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예 :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으로 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며,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정 근보증」 특정한 종류의 거래(예:증서대출거래)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보증하며,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된 때에도 보증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포괄 근보증」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여신거래로 인한 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형태의 채무를 포함한다)를 보증하여 그 책임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므로 포괄근보증를 선택할 경우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십시오.

등록No. : 31-11-2 재질 : 모조70g/㎡
인쇄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1.07.26 개정)

여신조건변경 약정서(기한연기,조건변경,한도변경)

MG새마을금고

수 입 인 지

결재	담 당			이사장

새마을금고는 채무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_____ **새마을금고** 앞

본인이 귀 새마을금고로부터 차입한 아래 여신에 대한 거래조건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신청하며 기약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확약합니다.

1. 기한연기

최초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약정만기일	연기후 약정만기일

연기 전 적용금리				연기 후 적용금리				비고(계좌번호)
☐ 고정금리	%			☐ 고정금리	%			
☐ 변동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변동주기	☐ 변동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 변동주기	
		%				%		

2. 조건변경

〈변경구분〉				
☐ 차주	☐ 담보	☐ 보증	☐ 금리체계 및 기준금리	☐ 기타

〈변경대상 계좌정보〉				
최초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약정만기일	적용금리			비고(계좌번호, 보증내용 등)
	☐ 고정금리	%		
	☐ 변동금리	기준금리	가산금리	금리변동주기
			%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등록No. : 31-01-12 재질 : 모조70g/㎡
인쇄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3.10.30 개정)

MG새마을금고중앙회 제정

여신조건변경 약정서(기한연기,조건변경,한도변경)

MG새마을금고

3. 한도변경

최초약정일자	여신과목	변경전 약정금액	변경후 약정금액	비 고(계 좌 번 호)

4. 기타 조건변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거래방법변경	거래(한도, 개별)	거래(한도, 개별)
기한의 이익 상실(부활)		

5. 승인조건

※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기재예시 : 1.수령함 2.들었음)

1.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신청(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3.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채무자(겸 담보제공자)	(인)
	연 대 보 증 인	(인)
	연 대 보 증 인	(인)
	담 보 제 공 자	(인)

채무자(겸 담보제공자)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직 장/휴대폰 :

연 대 보 증 인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직 장/휴대폰 :

연 대 보 증 인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직 장/휴대폰 :

담 보 제 공 자 (인) 전 화 번 호 :

주 소 직 장/휴대폰 :

20 년 월 일

상 담 자	직 위 :	성 명 : (인)

주) 1. 기한연장으로 인하여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금리변경내역도 조건변경내용에 포함할 것
2. 보증인 교체인 경우 구 연대보증인은 변경전 란에 신 연대보증인은 변경후 란에 표시하고 면제인 경우에는 변경후 란에 면제라 기재할 것
3. 보증인 교체(면제)인 경우에는 조건변경하고자 하는 여신내용의 비고란에 보증종류, 보증한도 등을 기재할 것
4. 보증인 추가인 경우에는 변경사유란에 보증인 추가라고 기재할 것

등록No. : 31-01-12 재질 : 모조70g/㎡
인쇄 : 별색 4도 면수 : 양면
규격 : 210×297㎜ (2023.10.30 개정)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

_____ 새마을금고 귀중

* 귀 새마을금고와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여신(금융)거래라 함은 신용사업(여신) 및 부수업무(보증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리스크관리, 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분석 – 여신(금융)거래 관련 비대면 이상금융거래,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및 예방(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새마을금고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공제 등)의 해지 및 서비스(보호예수,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금고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국적, 직장/직업정보(직장명, 직위, 재직(사업)년수, 주거정보(주택소유구분, 주거현황, 거주기간, 임대현황 및 금액), 배우자 등 여신관련인 정보(가족정보) – 기기식별 ID, 앱 설치 정보, 앱 이상 패턴, 악성앱 탐지정보(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ㄴ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내역,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ㄴ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지출, 소득(연소득 또는 추정자료 포함)의 총액, 소유부동산정보, 담보현황 및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건강보험료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기술신용정보 등 이와 유사한 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

●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새마을금고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카드 및 제3자 담보 제공, 공제 등)의 해지 및 서비스(보호예수,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금고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국적, 직장/직업정보(직장명, 직위, 재직(사업)년수), 주거정보(주택소유구분, 주거현황, 거주기간, 임대현황 및 금액) - 기기식별 ID, 앱 설치 정보, 앱 이상 패턴, 악성앱 탐지정보(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ㄴ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내역,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ㄴ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지출, 소득(연소득 또는 추정자료 포함)의 총액, 소유부동산정보, 담보현황 및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건강보험료납부액, 국민연금납부액, 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기술신용정보 등 이와 유사한 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제3자에 대한 제공 [특정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함] – 서울보증보험 : MCI,생활안정자금,임차자금상품 등 서울보증보험 협약 상품에 한함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 보증서 대출에 한함 –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및 그 수탁업체 :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에 한함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채권의 매입의뢰, 평가, 양수도,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한 때까지 보유·이용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번호, 국적, 직장명, 직위, 재직(사업)년수, 주택소유구분, 주거현황, 거주기간, 임대현황 및 금액, 배우자 등 여신관련인 정보(가족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설정 내역 정보,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ㄴ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신용능력정보	재산, 채무, 지출, 소득(연소득 또는 추정자료 포함)의 총액, 소유부동산정보, 담보현황 및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법원의 심판 및 결정정보,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기술신용정보 등 이와 유사한 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새마을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회·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성명 : (서명)

대리인 성명 : (서명)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필수] 상품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여신)

L-01-0302
001 1/1

_____ 새마을금고 귀중

* 귀 새마을금고와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 위 보유 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새마을금고와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 제공 등)의 해지 및 서비스(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해당 대출 상품(담보대출 / 신용대출) 체크 후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보대출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담보종류(예적금, 공제, 보증서, 부동산, 동산, 퇴직금, 유가증권, 확정채권, 주식), 담보물건 관련 정보(담보물건의 주소, 면적, 감정평가, 임대차관련 계약 정보 등)
ㄴ 신용거래정보	협약대출 관련 정보(정책자금대출 및 보증기관 보증대출에 한함)
ㄴ 신용능력정보	배우자 소득정보(소득합산 시 DTI평가 또는 상환능력평가를 하는 경우)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신용대출 수집·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ㄴ 신용거래정보	가맹점 관련 정보(착한가격업소 우대대출에 한함)
ㄴ 신용능력정보	학자금 관련 정보(학자금대출에 한함), 보증 관련 정보(보증대출의 경우에 한함)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 성명 : (서명)

대리인 성명 : (서명)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MG새마을금고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여신]

_____ 새마을금고 귀중

* 귀 새마을금고와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 여신(금융)거래 관련 비대면 이상금융거래,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및 예방(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보유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까지 보유·이용** 다만,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 기기식별 ID, 앱 설치 정보, 앱 이상 패턴, 악성앱 탐지정보(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조회**
거부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금융)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필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여신]

개인(신용)정보 ㄴ 일반개인정보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❶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새마을금고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당 새마을금고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당 새마을금고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ㄴ 일반개인정보	– 성명, 국내거소신고번호,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기기식별 ID, 앱 설치 정보, 앱 이상 패턴, 악성앱 탐지정보(비대면금융거래에 한함)
ㄴ 신용거래정보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포함) 및 당좌(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내역
ㄴ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채무불이행 정보
ㄴ 신용능력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ㄴ 공공정보 등	개인신용평점, 체납정보, 신용회복지원정보 등 이와 유사한 신용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새마을금고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새마을금고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회·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 성명 : (서명)
대리인 성명 : (서명)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MG새마을금고